



보건복지부



수신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유)

제목 (사) 대한미용사회 정관변경 허가 통보

1. 관련: 대미중 제2022-105호(2022.5.9) 「(사)대한미용사회 정관 변경 허가 신청」
2. 위와 관련하여 귀 법인에서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변경허가하오니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정관변경허가서(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김광수	보건사무관(진)	원지영	생활보건TF팀	전결 2022.5.19.
				장	김정희

협조자

시행 건강정책과-3687 (2022. 5. 19.)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건강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858 팩스번호 061-840-0517 / kimgwangsoo5596@korea.k / 비공개(7)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보건복지부 허가 제91-26호

정 관 변 경 허 가 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정관을 「민법」 제42조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일부개정 정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23에 둔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중앙회 산하 직할지회는 서울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특례시의 구별로 각 1개씩 둔다.

제22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제2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보선되는 때에는 그 임기는 선출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각급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그 권한은 차기 대의원을 선출할 총회의 종료 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의 변경 이전에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정관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u>방배동 925-5번지</u> 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법인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u>방배로 123</u> 에 둔다.
제6조(지회) ① 중앙회 산하 직할지회는 <u>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시의 자치구별로</u> 각 1개씩 둔다	제6조(지회) ① 중앙회 산하 직할지회는 <u>서울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특별시의 구별로</u> 각 1개씩 둔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금치산자, 한정치산자</u> , 미성년자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 미성년자
제24조(임원의 보선) ①~②(생략)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보선되는 때에는 그 임기는 선출된 해부터 <u>3년</u> 이 되는 해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임원의 보선) ①~②(생략)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이 보선되는 때에는 그 임기는 선출된 해부터 <u>4년</u> 이 되는 해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32조(대의원의 임기 및 보선) ① 각급 대의원의 임기는 <u>3년</u> 으로 하며, 그 권한은 차기 대의원을 선출할 총회의 종료 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32조(대의원의 임기 및 보선) ① 각급 대의원의 임기는 <u>4년</u> 으로 하며, 그 권한은 차기 대의원을 선출할 총회의 종료 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②~④ (생략)